

---

# 2018 서해 평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공모

지원신청서 작성 안내

---

2018. 8.

---

# 문화예술지원사업 공통 안내

---

##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

- 2017년부터 국가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의무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e나라도움을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1천만원 이상의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 정보공시를 시행해야 합니다.

## 개인 및 단체 예술가 자부담 의무 면제

- 2017년도부터 '개인 및 단체'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자부담 의무를 면제합니다.
- 자부담 책정 시, **자부담 전액**을 증빙해야 합니다.

## 단체의 경우, 법적 등록(신고) 필수

- 중앙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가 의무화되어,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프로젝트 팀의 경우, ①단체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거나, ②대표자가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관할 지역 세무서, 3~7일 소요)

## 사업의 집행과 시기

- 선정된 사업은 인천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**2018년 12월 31일 이내**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.

## 단체 대표자에게는 사례비 지급 불가

- 대표자에게는 지원금으로 사례비(기획료, 연출료 등)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
- 자부담으로도 대표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## 지원신청 제외 주체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기관·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, 개인(관련 법령,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-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, 개인
  - ※ 단, 시·도(문화재단)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,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지역협력형사업 유형에 한정함
  - ※ 2017-2018년도(1차)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 제외
- 2017년도까지 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, 개인

---

※ 단, 사·도(문화재단)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.

-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 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, 개인

---

## 지원신청 불가 사업

-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비, 시·군·구비, 한국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학번역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
※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,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, 인적·물적 구성요소,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
-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- 보조금수령자의 지역협력형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
-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---

## 기타사항

- 지원선정된 단체는 「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」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- 지원사업 진행 도중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경우,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향후 타 지원사업 심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(※ 변경조치기준표 참조)
  - 재단관계자(내부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)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합니다.
  - 추가제출 자료에 한하여 선정공고 후 1개월 동안 반환기간을 시행하오니, 해당 신청자께서는 이 기간 동안 재단을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(이후에는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) 또한 우편으로는 추가제출 자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-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선정 이후 주요 참여자 변경 시, 변경조치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.
  -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뒷자리(7자리)는 마스킹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및 발간물에는 인천문화재단, 인천시 후원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선정사업은 추후 사업수행 시 재단이 실시하는 참관 및 현장평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-

# 지원신청서 작성 방법

## I 지원신청서

지원사업	<p>_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V 표시</p> <p>_주요활동 분야를 기재 (예) 시각예술-커뮤니티아트/ 공연예술-연극</p> <p>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장르를 기재하거나 주요 활동 장르를 기재</p>
신청개요 사업명	<p>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</p> <p>(전시의 경우 전시명/ 공연의 경우 공연명/ 리서치일 경우 주요 연구주제)</p>
총사업비	<p>_사업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을 '원' 단위로 기재</p> <p>_지원신청금과 외부 재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</p> <p>_자부담 의무는 없음</p>
지원신청금	<p>_인천문화재단에 지원 신청하는 금액을 '원' 단위로 기재</p> <p>_창작발표형의 경우 1,000만원~8,000만원, 리서치형의 경우 500만원~1,000만원 범위</p>
사업기간	<p>_창작발표형의 경우 사업 시작일과 끝나는 일을 기재하고, 리서치 포함 기간을 별도 추가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리허설 및 사업 준비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</li><li>· 시각예술: 설치를 제외한 실재 전시기간/</li><li>· 공연예술: 셋업, 리허설을 제외한 실제 공연기간</li><li>· 출판 사업의 경우 출간예정일을 기재</li></ul> <p>(예, 2018년 8월 10일이 출간 예정일 : 작성란에 '2018. 8. 10. ~ 2018. 8. 10.'로 기재)</p> <p>_미확정인 경우 계획 기간을 기재</p> <p>_리서치형일 경우 리서치 기간을 모두 기재</p>
사업장소	<p>_사업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장소 기재 (출판의 경우 출판사 이름)</p> <p>_여러 지역을 순회하거나 수차례 개최되어 장소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작성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거나 '○○○(대표적 장소) 등 ○개처' 로 기재</p> <p>_장소 확정여부 V 표시</p> <p>_‘창작발표형’의 경우 작품제작 및 프로젝트 진행은 섬에서 하되, 창작 작품 발표는 인천 내에서 진행 가능</p>
신청자 정보	<p>_신청인의 유형을 개인·단체로 구분하여 작성</p> <p>_그룹의 경우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하고, 그룹 내용을 추가로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개인 : 성명과 연락처 기재 (필명, 예명 사용 시 본명과 병기)</li><li>· 단체 : 단체명(약칭, 별칭 등은 안 됨), 대표자와 실무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</li><li>· 그룹 : 단체와 동일</li></ul>

## II 사업계획서

**사업 세부계획**    \_추진배경, 필요성, 기획의도 등을 작성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‘사업내용 작성 참고표’의 사업내용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고, 양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

### [사업내용 작성 참고표]

사업구분	사업내용 항목
<b>전시형태</b>	_전시명, 전시 기획의도 및 주제, 전시 기획자 및 참여 작가 명단(성명·연령·주요 경력 및 현직 등), 전시작품 종류 및 수량, 전시내용 및 해설, 전시구성 및 연출방안, 홍보계획, 관람료 유/무, 전시기획자(큐레이터) 경력사항
<b>공연형태</b>	_공연작품명, 공연기획의도, 초연·재연 여부, 공연회수, 정기(정례) 공연의 경우 차수, 공연소요시간, 공연주제, 공연내용(줄거리),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(성명·연령·주요경력·현직 등), 홍보계획, 관람료 유무 여부 등 _이미 공연된 적이 있는 우수 작품의 재연을 신청하는 경우, 이전 공연 실적 첨부 (작품명·기간·장소·참여자·관객수·언론보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내용, 재공연 이유와 재공연시 보완사항 등)
<b>출판사업</b>	책자명, 수록내용, 규격, 면수, 출판사, 발간예정일, 발간주기, 발간부수, 판매·보급 등 활용계획, 홍보계획

**사업추진일정**    사업 준비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진행 항목과 추진일정 기재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준비 및 연습기간 / 리서치 기간/ 작품 제작기간/ 설치 및 진행 기간 포함)

**홍보계획**        주요 홍보 매체 및 전략을 기재

**기대효과 및 사업성과**    예상되는 기대효과, 예술적 파급효과를 기술하고, 계량적인 사업성과를 수치로 기재

**예산계획**        \_아래 <사업예산참고표>를 참조하여 예산항목에 적합한 세부 예산항목 기재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함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선정자 본인에게는 지원금으로 사례비(기획료, 연출료 등)를 지급할 수 없음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지원금은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,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
**개인소개서**     \_시각예술 : 개인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작가 본인의 소개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공연형태 : 주요 제작진(연출가·안무가·작곡가 등) 및 주요 출연진 소개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기획 프로젝트 형태 : 기획자의 소개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\_출판 : 창작집 등 단행본을 발간하고자 하는 작가 본인의 소개서

**그룹 및 단체 일 경우**    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 및 그룹의 연혁 및 활동실적 소개서

### III 변경조치 기준표

####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

세 목	내 역
<b>전시 및 작품제작비용</b>	
임차료	작품 임차료(보험료 포함), 각종 기구 임차료 등
인건비	전시기획자 인건비, 전시장 안내원 인건비 등
대관료	전시실 임차 사용료(부대 설비비 포함) 등
전시장 설치비	전시장 설치 및 철거비용, 작품 운반비 등
제작비용	액자제작비, 각종 설치물 제작비용 등
도록비용	도록 인쇄비용 등
<b>공연 및 작품제작비용</b>	
인건비	작곡료, 편곡료, 작사료, 부지휘료, 연습피아니스트료, 조율비, 연출료, 감수료, 안무료, 무대감독료, 음향감독료, 조명감독료, 무대미술, 의상비, 연출 등 조수로, 메이크업, 대본료, 번역 가사료, 작품사용(저작권)료, 지휘료, 연주료, 솔리스트료, 합창료, 사보료, 출연료, 기획자 및 진행 요원 임금 등
제작비	각종 제작비, 장비(악기 포함) 및 물품(의상 포함) 대여료 등
대관료(공간)	공연장 대관료 및 사용료(부대 설비비를 포함) 등
<b>홍보비용</b>	
통신비	초대장 및 안내장 발송비용 등(전화비는 포함할 수 없음)
홍보비	광고 홍보비(신문, 잡지, 인터넷, 광고디자인 비용),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비용 등
인쇄비	입장권, 광고지, 포스터, 프로그램, 각종 홍보자료 인쇄비 등
기록비	영상녹화비, 사진촬영비 등
<b>여비</b>	
교통비	도선비, 도서 지역내 교통비, 유류대
숙박비	도서 지역내 숙박비
식비	도서 지역내 사업주체자 식비

#### 지원금 사용 불가능 항목

세 목	내 역
<b>지원금 사용불가 항목</b>	
공공요금	전기세,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
통신요금	국내외 전화요금,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
식비	사업준비 및 사업기간에 사용된 식사비용
기자재 구입비	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
경상운영비	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

※ 사업수행시에 사업일수/회수, 사업장소, 총사업비 등이 변경조치기준표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규모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함.  
(아래 변경조치기준표 참조)

#### IV 변경조치 기준표

변경내역		변경정도	조치사항	
사업주체	사업주최자	사업주최자의 실질적 변경	지원금 취소	
사업일정	사업일수	총 사업일수 및 사업횟수가 50%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	지원금 취소	
사업규모	사업규모	사업규모가 50%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(전시작품수, 참여작가수, 프로그램 수 등)	지원금 취소	
사업일시	개최시기	사업개최일시(시작일시)가 지원신청시보다 2개월 이상 미루어지는 경우	사안에 따라 승인 결정	
사업장소	사업장소	사업장소의 규모가 50%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	지원금 취소	
사업예산	총사업비	총 사업비가 지원신청시의 60%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(단, 지원신청당시의 금액과 최종선정금액이 큰 쪽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예산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편성 가능) * 자부담이 60% 이상인 경우 제외	지원금 취소	
사업내용	주요사업 참여자	주요 출연진 또는 사업(창작) 책임자의 변경 출연진 · 제작진 50% 이상 변경 및 축소 연출가 변경(연극 분야) 안무가 변경(무용 분야) 전시기획자 변경(전시 형태 사업) 주요 사업기획자 변경(각종 기획사업)	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	
	사업형태	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	지원금 취소	
	작 품	작품 및 작가 변경	지원금 취소	
	결과물	크기 및 수량이 50% 이상 축소되는 경우 (책자 발간 부수 등)	지원금 취소	
	프로그램	공연 프로그램	공연 프로그램 50% 이상 변경(음악/국악)	지원금 삭감
		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50% 이상 변경	지원금 삭감	
	사업수행	사업포기	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	익년도 행정심의에 반영 -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

---

## V 원천징수 관련 안내

---

### 1. 원천징수세율

- 사업소득
  -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·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  - 지급금액의 3.3%(주민세 포함)
- 기타소득
  -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  - 지급금액의 6.6%(주민세 포함) / 166,666원 초과 시 징수

예))	①지급총액	②필요경비 (①x70%)	③소득금액 (①-②)	④세율(%)	⑤소득세 (③x④)	⑥주민세 (⑤x10%)
	1,000,000	700,000	300,000	20%	60,000	6,000

※ 사업소득은 발생한 모든 인건비에 대해 3.3%의 원천징수를 하며, 기타소득으로 166,666원 초과 인건비가 발생하면 6.6%의 원천징수를 함

### 2. 원천징수세액 납부

- 소득세
  -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, 납부서는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
- 주민세
  - 납부서를 구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

3. 다음과 같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

-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(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)
  -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등 선임신고서(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6의 4호 서식)
  - 정관 또는 규약, 임원회의록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사업장 임대계약서
  -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
-